사 규 번 호	60-5-4
관 리 부 서	감 사 팀
등 급	일 반

신고제도 운영지침

Samyang Foods

[목 차]

장	조	제목	페이지
제1장		총칙	4쪽
	제1조	목적	4쪽
	제2조	용어의 정리	4쪽
	제3조	적용범위	4쪽
제2장		신고 및 처리 방법	5쪽
	제4조	신고 대상행위	5쪽
	제5조	신고 의무	5쪽
	제6조	신고 방법	6쪽
	제7조	조사 방법	6쪽
	제8조	결과보고 및 사후 처리	7쪽
	제9조	이의 제기	7쪽
	제10조	포상	7쪽
제3장		신고자 보호	7쪽
	제11조	비밀보장	8쪽
	제12조	신고자 보호	8쪽
부칙	제1조	시행일	9쪽
	제2조	지침의 변경	9쪽
별첨	1	비밀유지 서약서	10쪽

[지침번호 : 60-5-4/ 관리부서 : 감사팀**]**

신고제도 운영지침

2022.05.01 제정

2023.08.01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감사규정에 따라 신고제도의 운영 절차를 정하고 법률, 규칙, 회사의 사규 등을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알린 신고자를 보호하며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임직원'이라 함은 삼양식품㈜ 내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② '회사'는 삼양식품㈜를 말한다.

③ '협력사'는 회사와 거래 중이거나 거래를 진행할 예정인 회사를 말한다.

④ '업무 관련자'는 회사와 거래, 업무 진행 등과 관련된 임직원 이외의 개인을 말한다.

⑤ '감사인'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 '비밀보장 의무자'라 함은 신고제도를 통해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처리 등을 수행한 임직원 또는 직·간접적으로 신고자의 신원 및 해당 내용 등을 알게 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

⑦ '신고'는 회사 및 임직원의 업무 활동에 관하여 법률, 규칙, 회사의 사규 등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또는 위험이 발생 가능한 사항을 본 지침에 따라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⑧ '신고자'는 본 신고제도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한 개인, 부서, 본부, 회사 등을 말한다.

⑨ '피신고자'는 신고자가 신고제도를 통하여 부정행위, 위험이 발생 가능한 사항을 신고한 개인, 부서, 본부, 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회사, 임직원, 업무 관련자, 협력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은 자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자회사의 임직원, 업무관련자, 협력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제2장 신고 및 처리 방법 -

제4조 (신고 대상행위)

① 신고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위반
2. 회사의 사규 등의 위반
3. 협력사 등과의 계약 위반 행위
4.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 임직원의 금품·향응·접대·편의 등 부당 수수, 청탁, 부패 등의 불법 및 부당행위
5. 임직원의 공금횡령, 배임, 절도, 공갈, 회사 자산의 불법 및 부당 사용 등
6. 채용 또는 인사 등의 비리
7.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처리, 손해를 끼치는 행위
8. 부정한 목적으로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9.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
10.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11. 윤리행동지침 위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 및 조직문화 저해 행위
12. 고의 또는 중과실, 비효율적 업무운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13. 그 외 기타 기업 윤리에 반하는 행위

② 신고제도를 통하여 제1항의 신고 외에 다음 각 호의 제안도 할 수 있다.

1.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2.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임직원 추천
3. 협력사 지원에 대한 사항

제5조 (신고 의무)

① 임직원, 업무 관련자, 협력사 등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고 대상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임직원 또는

허위신고를 한 임직원을 관련 사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6조 (신고 방법)

① 신고방법은 신고 전용 감사부서 이메일에 발송, 우편 발송, 전화, 방문 신고, 사이버감사실 신고, 구두 제보,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 등에 의한다.

② 신고내용 작성방법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작성한다. 단,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당 내용이 육하 원칙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은 감사부서의 장만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는 열람하거나 열람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단, 감사부서의 장이 조사를 위해 배정한 감사인, 제7조 제3항에 따라 선임한 사내 전문인력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열람 할 수 있다.

④ 제4조 제2항에 따른 제안은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7조 (조사 방법)

① 감사인은 신고가 접수된 때에 그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한다.

1.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 사실을 확인 후 본격적인 조사의 요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예비조사 중 또는 종료 후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조사계획을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 조사는 원칙적으로 법률, 회사의 사규 및 기타 선례 등에 기초하여 증빙자료 및 관련자 인터뷰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지만, 필요한 경우 법률 및 회사 사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적절한 방법 내지 검증 절차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대상자 및 부서에 자료 제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추가적으로 사내 전문인력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지원한다.

④ 감사인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접수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3. 접수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의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 회사의 사규 등을 고려했을 때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⑤ 감사인은 조사와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기타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그 행위자의 접근권한을 차단하고 격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금지시키고, 회사에 그 행위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감사인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유관부서로 이관하여 검토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제안의 진행사항에 대한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지할 수 있다.

제8조 (결과보고 및 사후 처리)

① 감사인은 제7조에 따라 조사를 종료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위원회에는 분기 또는 반기에 처리현황을 보고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게 즉시 보고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 보고 후 징계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 보고 후 사법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 준법지원인과 협의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한다.

④ 감사인은 신고에 대한 처리의 종료 또는 제7조 제4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결정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익명의 신고자가 알 수 있게 공지할 수 있다.

⑤ 조사자료는 감사규정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최소 5년, 최대 10년간 관리 및 보존한다.

제9조 (이의 제기)

①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는 조사결과를 포함한 감사인의 처리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내용의 재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의 제기 사항을 해당 기록에 추가 및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방법은 제7조를 준용하며, 조사 후 결과보고 및 사후처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포상)

① 감사인은 신고한 내용이 회사에 발생 또는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방 하였는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유관부서에 적절한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포상을 요청 받은 부서는 포상과 관련된 규정 및 신고내용을 적절히 검토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본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신고자 보호 -

제11조 (비밀보장)

① 신고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은 비밀 보장 되어야 한다.

② 비밀보장 의무자는 신고자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용 및 신원 등의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안되며 비밀보장 의무자는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법에 따라 해당 신고자, 신고내용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을 확약하기 위하여 비밀보장 의무자는 [별첨1]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 후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피신고자, 피신고자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이 누설되었을 때에는 감사인이 그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⑥ 감사인은 제5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진술 등을 요청 받은 부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회사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자 보호)

① 회사 및 감사인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일체의 불합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는 해당 신고로 인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인에게 조사 및 신고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인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는지 조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자의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라 감사인이 신고자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한 임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침의 변경)

본 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의 사규에 따라 변경한다.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신고제도 운영지침 제7조, 제11조, 제12조 등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로 인해 해당자 또는 해당 회사에 불합리한 대우, 조치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하고,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의 사규에 따라 징계 조치 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또는 서명)